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제1조 (목적)

본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이하 "당사"라 함)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기본원칙)

본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3조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 ②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부서장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품질 등 유관 부서장이 참여 및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③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내부 심의위원은 연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수시로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 ③ 내부 심의위원회는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하도급 제조위탁 업체 중 2021년 기준 2.1억 이상 거래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관련 사전 심의사항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여부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
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금지 위반 여부	

- ④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
- ⑤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⑥ 내부 심의위원회는 추가 협의 안건(내부 협의사항 및 협력사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⑦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⑧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 ⑨ 심의 및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제5조 (사후 관리)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